

직제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2
제4조(정원)	2
제5조(직급 및 직위)	2
제6조(검직)	2
제3장 직제 및 권한	
제7조(위원장)	2
제8조(부위원장)	2
제9조(사무총장)	2
제10조(부서)	2
제11조(보직기준)	2
제12조(권한의 위임)	2
제13조(직무대행)	2
제14조(임시조직의 설치)	3
제4장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부칙	3
별표	
1. 삭제	5
2. 정원표	5

직제규정

제정	2007. 6. 22.	
개정	2008. 1. 7.	
개정	2008. 12. 24.	
개정	2009. 12. 29.	
개정	2012. 1. 10.	
개정	2014. 1. 20.	
개정	2015. 12. 3.	
승인	2015. 12. 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2841호
개정	2016. 1. 29.	
승인	2016. 2. 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481호
개정	2016. 12. 21.	
승인	2017. 1. 10.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151호
개정	2017. 12. 28.	
승인	2018. 2. 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499호
개정	2019. 5. 16.	
승인	2019. 6. 10.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2159호
개정	2019. 12. 9.	
승인	2020. 1.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4254호
개정	2020. 12. 18.	
승인	2020. 12. 2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6469호
개정	2022. 7. 21.	
승인	2022. 7. 2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2207호
개정	2023. 2. 21.	
승인	2023. 3. 1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706호
개정	2024. 2. 16.	
승인	2024. 3. 2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10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의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08.12.24., 2016.1.29.>

제2조(적용범위) 도핑방지위원회의 조직 및 직제와 그 권한에 대하여 법령이나 정관 및 기타 특별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9.>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도평방지위원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 밑에 경영본부, 사업본부 및 홍보실을 두며, 기획조정부, 운영지원부, 국제협력부, 교육진흥부, 도핑검사부, 과학연구부, 법제조사부를 둔다. <개정 2014.1.20., 2016.1.29. 2017.1.10., 2018.2.7., 2020.1.1., 2020.12.29., 2022.7.27.>

② 사무국의 부서별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신설 2014.1.20.>

③ 도평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와 지도자의 제재를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제재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개정 2014.1.20., 2016.1.29., 2020.12.29>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개정 2014.1.20.>

⑤ 삭제 <2020.12.29>

제4조(정원) ① 도평방지위원회의 총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0.>

② 총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0.>

③ 삭제 <2014.1.20.>

제5조(직급 및 직위) ① 도평방지위원회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20.>

② 삭제 <2014.1.20.>

제6조(겸직)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직제 및 권한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도평방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도평방지위원회 업무의 집행을 책임진다.

제10조(부서) ① 도평방지위원회는 본부, 실·부에 본부장, 실·부장을 둔다. <개정 2009.12.29., 2014.1.20., 2020.1.1., 2022.7.27.>

② 본부장, 실·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소속 부원을 지휘·감독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20., 2022.7.27.>

제11조(보직기준) ① 본부장은 일반직 1급부터 2급까지, 실·부장은 일반직 2급부터 3급까지로 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직기준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직원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1.20., 2016.1.29., 2020.1.1., 2022.7.27., 2024.3.26.>

② 보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위원장은 도평방지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도평방지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부장, 실·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1.20., 2020.1.1., 2022.7.27.>

직제규정

제13조(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총장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본부장, 실·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29., 2014.1.20., 2020.1.1., 2022.7.27.>

③ 본부장, 실·부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 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 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4.1.20., 2020.1.1., 2022.7.27.>

제14조(임시조직의 설치) 특정업무 수행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업무분장 <삭제 2014.1.20.>

제15조 삭제 <2014.1.20.>

제16조 삭제 <2014.1.20.>

제17조 삭제 <2014.1.20.>

제18조 삭제 <2014.1.20.>

부칙 <2007.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연구조사부는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주무부처와 협의 후 설치한다.

부칙 <2018.2.7.>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10.>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27.>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4.>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6.>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별표 1] <개정 2008.1.7., 2008.12.24.> <삭제 2014.1.20.>

[별표 2] <개정 2008.1.7., 2009.12.29., 2014.1.20., 2015.12.15., 2016.7.29., 2016.12.21., 2019.6.10., 2020.1.1., 2023.3.14.>

정원표

구 분	사무총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정 원	1	1	2	7	9	12	18	50